

## 2. 住宅建設基準 등에 관한 規則中 改正令

건설교통부령 제110호 1997. 7. 21

###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

침실 및 거실의 최소너비기준을 폐지하고 반자높이 및 층 높이는 최소치만을 규정하며 마감재료의 세부기준을 없앴으로써 주택의 건설기준을 완화하여 주택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고, 발코니에 설치하는 배수구를 오수관로에 연결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시공과 입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오수가 우수구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함.

### 주요내용

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치수 및 기준척도)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. 다만,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

수로 할 수 있다.

2.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3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으  
기준척도로 할 것. 다만, 세대당 전  
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 
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기준척도로  
할 수 있다.
3. 부엌·식당·욕실·화장실·복도·  
계단 및 계단참 등의 평면 각변의  
길이 또는 너비는 10센티미터를 단  
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록 할 것. 다  
만,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  
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

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 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.

4.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(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)는 2.2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.4미터 이상으로 하되, 각각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.
5.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. 다만,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.
6.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0조(배수설비등) ① 영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.
- ② 영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별표 1 제3호의 표중 “직할시”를 “광

역시”로 하고, 동표 제4호 및 제5호 비고중 “국민학교”를 각각 “초등학교”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중 “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제1항”을 “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,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·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 서식중 “시장”을 “검사기관 인”으로 한다.

도지사 인

검시기관

별지 제12호의 4서식중 “제22조의 4 제1항”을 “제22조의 4 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주택의 치수·기준척도 및 배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이거나 사전결정을 받은 주택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이거나 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주택회보